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9.4(월) 15:00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안 이유

- 수산식품의 가공·직판매장·연구생산 등의 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여 내수면 어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운영 및 관리(제5조)
 - 충청북도 직영 원칙, 도지사가 필요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가능
- 사용허가(제6조)
 - 시설 사용·수익은 도지사 허가 필요
- 사용·수익 허가 방법(제7조)
 - 입주업체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
- 사용·수익 허가 기간(제8조)
 - 사용기간은 5년 이내, 1회 3년 연장 가능
- 사용료 부과(제13조)
 - 해당 시설물 재산평정가격의 연 1,000분의 10이상 부과

○ 운영위원회(제19조)

- 위원장 행정부지사, 위원 10명 이내, 입주업체 선정 등 심의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'은 수산식품의 가공·직판매장·연구생산 등의 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여 내수면 어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, 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,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,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안 제7조제1항 중 '사용신청서' 부분과, 안 제19조제3항 중 '위촉직 위원의 임기'를 3년으로 규정했는데 연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